

신남방

베트남 VIETN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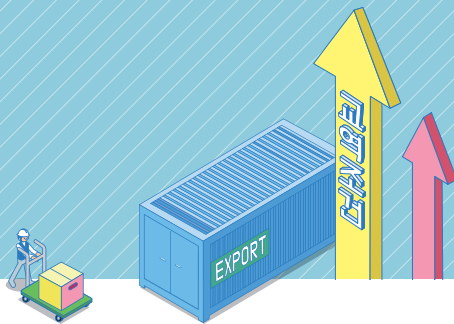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253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268
03. 비관세장벽 현황	271
04. 수출 애로사항	282
05. 현지화 자문보고서	284

2023년 한눈에 보이는
국가별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현황



2023년 한눈에 보이는
베트남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용어 정의]



비관세장벽

-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TBs)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함
- 비관세장벽은 각 국가가 타국의 상품 생산자 및 수출자에게 규제 준수 및 비용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및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체제 내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됨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 첨가물,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 유발 매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임
- (예시) 육제품 생산 시 호르몬 및 항생제 사용 제한, 가공식품에 특정 첨가물 사용 제한 조치 등

TBT(기술 장벽)

- TBT(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각 국가가 지정한 자국의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라벨링, 인증 요건 등이 있음. 일례로, 국내 식품 라벨링 규정과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이 상이할 경우 수출기업은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수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
- (예시) 미국 유아용 조제분유 라벨링 규정, 콜롬비아 가공식품 앞면 영양표시 의무 규정 시행, 나이지리아 트랜스지방 첨가요건 및 라벨 표시 강화 방안 식품 규제 발표 등

1. 시장개요

시장규모

- 2022년 식품 시장규모는 774억 달러(한화 약 101조 3,940억 원)로 전년 대비 7.4% 증가함
 - 신선식품 시장규모는 352억 달러(한화 약 46조 1,120억 원)로 전체 시장의 45.5% 차지함
 - * 신선식품 중 채소류가 102억 달러(한화 약 13조 3,620억 원)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육류(11.8%), 낙농품(9.3%), 과일 및 견과류(9.3%), 유지류(1.9%) 순임
 - 가공식품 시장규모는 전체 시장의 54.5%에 달하는 422억 달러(한화 약 55조 2,820억 원)로 전년 대비 6.6% 증가함
 -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가 146억 달러(한화 약 19조 1,260억 원)로 가공식품 중 가장 비중이 크며, 스낵류 132억 달러(한화 약 17조 2,920억 원), 편의식품 53억 달러(한화 약 6조 9,430억 원) 순임

식품 시장규모(2018~2022)

(단위 : 십억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56.8	61.8	67.4	72.1	77.4	100.0	7.4
신선식품	25.6	27.9	30.3	32.5	35.2	45.5	8.3
- 채소류	7.4	8.1	8.8	9.4	10.2	13.2	8.5
- 육류	6.5	7.1	7.7	8.3	9.1	11.8	9.6
- 낙농품	5.3	5.8	6.3	6.7	7.2	9.3	7.5
- 과일 및 견과류	5.3	5.7	6.2	6.7	7.2	9.3	7.5
- 유지류	1.1	1.2	1.3	1.4	1.5	1.9	7.1
가공식품	31.2	33.9	37.1	39.6	42.2	54.5	6.6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1.1	12.0	13.1	13.9	14.6	18.9	5.0
- 스낵류	9.1	10.0	11.2	12.1	13.2	17.1	9.1
- 편의식품	3.9	4.2	4.6	4.9	5.3	6.8	8.2
- 스프레드 및 당류	3.7	3.9	4.1	4.3	4.5	5.8	4.7
- 소스 및 향신료	1.8	2.0	2.1	2.3	2.4	3.1	4.3
- 영유아용 식품	1.6	1.7	1.9	2.0	2.1	2.7	5.0
- 펫푸드	0.0	0.1	0.1	0.1	0.1	0.1	0.0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1) 환율 : 1달러=1,310.00원(2024년 1월 4일, 매매기준율 기준)

2) '22년 기준 시장규모, 수출입현황 등의 통계자료(출처 : STATISTA, ITC Trade Map 등)

소비인구 및 특성

- 2022년 기준 전체 인구 수는 약 9,819만 명으로, 전년과 비슷함
 - 연령대별 인구 비중은 0~14세(14.7%), 15~24세(14.0%), 25~34세(16.2%), 35~44세(15.6%), 45~54세(12.7%), 55세 이상(26.7%)으로 비슷함
 - 여성 인구 수는 약 4,969만 명(약 50.6%), 남성 인구 수는 약 4,850만 명(49.4%)으로, 여성 인구의 비중이 남성 인구보다 조금 높음
- 2022년 가구 수는 총 2,137만 가구이며, 1인당 소비 지출 규모는 평균 2,301달러(한화 약 301만원) 규모임
 - 2022년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규모 중 식품에 대한 지출 규모는 약 39.5%의 비중을 보이며, 전년 대비 8.6% 증가함
- 2022년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은 782.4달러(한화 약 102만원)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으며, 주로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스낵류, 채소류를 소비함
 - 신선식품 소비액은 연간 1인당 355.0달러(한화 약 46만원)로 채소류(13.1%)와 육류(11.7%)의 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남
 - * 1인당 연간 채소류 구매에 102.6달러(한화 약 13만원), 육류 구매에 91.9달러(한화 약 12만원)를 소비함
 - 1인당 연간 가공식품 소비액은 427.4달러(한화 약 56만원)이며, 그 중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소비액이 148.0달러(한화 약 19만원)로 가장 큰 비중(18.9%)을 차지함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2018~2022)

(단위 :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595.5	640.1	691.3	732.6	782.4	100.0	6.8
신선식품	268.3	288.3	311.5	329.8	355.0	45.4	7.6
- 채소류	77.7	83.4	90.1	95.3	102.6	13.1	7.7
- 육류	68.0	73.3	79.4	84.2	91.9	11.7	9.1
- 낙농품	55.6	59.7	64.5	68.3	73.2	9.4	7.2
- 과일 및 견과류	55.3	59.4	64.1	67.8	72.5	9.3	6.9
- 유지류	11.7	12.5	13.4	14.2	14.8	1.9	4.2
가공식품	327.2	351.8	379.8	402.8	427.4	54.6	6.1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16.4	124.7	134.3	141.9	148.0	18.9	4.3
- 스낵류	94.9	104.0	114.5	123.2	133.2	17.0	8.1
- 편의식품	40.9	44.0	47.5	50.3	53.6	6.9	6.6
- 스프레드 및 당류	38.8	40.4	42.1	43.5	45.6	5.8	4.8
- 소스 및 향신료	19.0	20.3	21.8	23.0	24.6	3.1	7.0
- 영유아용 식품	16.8	17.9	19.0	20.3	21.7	2.8	6.9
- 펫푸드	0.4	0.5	0.6	0.6	0.7	0.1	16.7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 가장 소비량이 많은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는 1인당 연간 104.2kg 소비함
 - 뒤이어 채소류 76.0kg, 낙농품 30.7kg, 과일 및 견과류 29.5kg 순으로, 신선식품 소비량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가공식품 중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에 이어 스낵류의 소비량이 19.5kg으로 높은 수준이며, 편의식품과 소스 및 향신료도 전년 대비 소비량이 증가함
 - * 스프레드 및 당류 소비량 15.0kg으로 당류 소비가 비교적 높은 편임

1인당 식품 소비량(2018~2022)

(단위 : kg,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년대비 증감률
신선식품	- 채소류	66.7	68.7	70.3	73.0	76.0	4.1
	- 낙농품	26.8	27.6	28.6	29.6	30.7	3.7
	- 과일 및 견과류	26.1	26.8	27.6	28.5	29.5	3.5
	- 육류	11.4	12.2	12.8	13.5	14.1	4.4
	- 유제품	2.2	2.3	2.3	2.4	2.4	0.0
가공식품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98.6	100.3	101.6	103.2	104.2	1.0
	- 스낵류	16.7	17.4	18.1	18.7	19.5	4.3
	- 스프레드 및 당류	15.3	15.1	15.0	14.9	15.0	0.7
	- 편의식품	8.8	9.0	9.2	9.3	9.6	3.2
	- 소스 및 향신료	6.1	6.3	6.4	6.5	6.7	3.1
	- 영유아용 식품	1.0	1.1	1.1	1.2	1.2	0.0
	- 펫푸드	0.3	0.3	0.3	0.4	0.4	0.0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2. 수출입현황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22년 농식품 수출액 206억 3,389만 7,000달러(한화 약 27조 304억 원)로 전년 대비 8.9% 감소함
 - 주요 수출국은 중국(23.4%), 미국(13.1%), 필리핀(9.0%)이며, 한국은 수출 비중 4.6%를 차지함
 - * 對중국 수출액은 48억 2,154만 8,000달러(한화 약 6조 3,162억 원)로 전년 대비 10.5% 감소하였으며, 미국으로의 수출액도 27억 1,102만 7,000달러(한화 약 3조 5,514억 원)로 전년 대비 14.0% 감소함
 - * 對필리핀 수출액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18억 5,437만 8,000달러(한화 약 2조 4,292억 원)로 집계됨
 - * 對한국 수출액은 9억 4,589만 7,000달러(한화 약 1조 5,542억 원)로 전년 대비 15.3% 증가함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20,696,299	20,101,665	20,300,692	22,638,589	20,633,897	100.0	-8.9	-0.1
1 중국	5,696,498	5,169,165	4,728,127	5,384,514	4,821,548	23.4	-10.5	-4.1
2 미국	2,730,488	2,464,338	2,852,146	3,151,686	2,711,027	13.1	-14.0	-0.2
3 필리핀	886,494	1,327,407	1,540,191	1,775,646	1,854,378	9.0	4.4	20.3
4 일본	1,038,153	1,131,058	1,145,485	1,227,078	1,186,434	5.7	-3.3	3.4
5 한국	717,145	672,647	689,618	820,150	945,897	4.6	15.3	7.2
6 네덜란드	693,235	627,519	675,882	692,796	769,518	3.7	11.1	2.6
7 캄보디아	319,691	387,368	452,785	566,166	618,771	3.0	9.3	18.0
8 말레이시아	501,969	473,862	521,073	466,181	567,957	2.8	21.8	3.1
9 태국	461,744	458,860	550,832	557,497	565,578	2.7	1.4	5.2
10 인도	414,981	409,939	394,551	511,670	471,547	2.3	-7.8	3.2

* 출처 : ITC TradeMap(www.trademap.org)

-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쌀(정미), 캐슈너트(탈각), 카사바 전분 등이 있으며, 쌀(정미)의 수출액이 29억 1,766만 달러(한화 약 3조 8,221억 원)로 단일 품목 중 가장 높은 비중(14.1%)을 차지함

- 캐슈너트(탈각)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18.7% 감소한 25억 1,262만 1,000달러(한화 약 3조 2,915억 원)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 이후 연평균 5.3% 감소함

- 카사바 전분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24.7% 증가한 11억 7,938만 9,000달러(한화 약 1조 5,450억 원)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 이후 5개년 연평균 성장률이 10.3%를 기록함

* 식용과실 기타 품목이 전년 대비 34.8% 감소하며 8억 4,270억 5,000달러(한화 약 1조 1,039억 원)의 수출 실적을 기록함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20,696,299	20,101,665	20,300,692	22,638,589	20,633,897	100.0	-8.9	-0.1
1 쌀(정미)	2,461,880	2,163,697	2,360,612	2,660,782	2,917,660	14.1	9.7	4.3
2 캐슈너트 (탈각)	3,128,961	2,941,542	2,843,195	3,088,963	2,512,621	12.2	-18.7	-5.3
3 카사바 전분	795,504	870,353	865,542	945,609	1,179,389	5.7	24.7	10.3
4 식용과실 기타	1,563,283	1,549,394	1,341,076	1,292,215	842,705	4.1	-34.8	-14.3
5 견과류·씨 기타	264,993	424,664	495,077	688,527	712,781	3.5	3.5	28.1
6 후추 기타	602,448	566,099	510,855	728,187	710,828	3.4	-2.4	4.2
7 조제식료품	153,942	201,438	252,598	332,058	416,021	2.0	25.3	28.2
8 바나나 (신선/건조)	103,763	175,243	161,716	230,207	307,170	1.5	33.4	31.2
9 베이커리류 기타	188,621	197,634	193,019	231,057	290,030	1.4	25.5	11.4
10 신선 두리안	269,394	271,222	71,397	103,245	287,239	1.4	178.2	1.6

* 주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ITC TradeMap(www.trademap.org)

- 2022년 농식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292억 9,470만 8,000달러(한화 약 38조 3,761억 원)로 최근 5개년 연평균 8.6%의 성장률을 기록함

- 주요 수입국으로는 미국(13.1%)와 호주(11.5%), 브라질(10.4%) 등이 있음

* 미국에서 수입되는 농식품은 38억 3,437만 9,000달러(한화 5조 230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유사한 규모를 형성함

* 호주에서 수입하는 농식품은 33억 7,262만 6,000달러(한화 약 4조 4,181억 원)로 전년 대비 27.2% 증가하였으며, 5개년 연평균 성장률은 26.8%임

* 브라질에서 수입하는 농식품은 30억 4,047만 3,000달러(한화 약 3조 9,830억 원)로 전년 대비 13.0%가 증가하였으며, 5개년 연평균 성장률도 16.2%를 보임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21,077,065	21,035,821	21,732,592	29,756,054	29,294,708	100.0	-1.6	8.6
1 미국	4,035,685	3,684,638	3,591,617	3,872,544	3,834,379	13.1	-1.0	-1.3
2 호주	1,305,524	1,234,794	1,203,658	2,652,059	3,372,626	11.5	27.2	26.8
3 브라질	1,666,928	1,864,274	2,133,559	2,689,784	3,040,473	10.4	13.0	16.2
4 캄보디아	617,976	571,932	598,312	2,941,630	2,877,420	9.8	-2.2	46.9
5 중국	1,473,450	1,484,440	1,273,936	1,559,732	2,232,386	7.6	43.1	10.9
6 아르헨티나	2,360,809	3,138,039	3,278,199	3,562,387	1,923,738	6.6	-46.0	-5.0
7 인도네시아	732,095	728,713	991,905	1,548,037	1,809,385	6.2	16.9	25.4
8 중국	877,552	736,404	850,048	1,800,346	1,675,680	5.7	-6.9	17.6
9 태국	1,298,107	1,300,683	1,503,863	1,137,487	1,055,627	3.6	-7.2	-5.0
10 말레이시아	567,394	629,433	611,485	861,617	879,767	3.0	2.1	11.6
13 한국	284,508	352,526	368,810	416,998	521,988	1.8	25.2	16.4

* 출처 : ITC TradeMap(www.trademap.org)

- 주요 수입 품목 중 대두유 추출 유박, 캐슈너트(미탈각), 밀 기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대두유 추출 유박은 9.7%의 비중을 차지하며 28억 3,571만 7,000달러(한화 약 3조 7,148억원)의 수입액을 기록하고 전년 대비 12.3% 증가함
 - 캐슈너트(미탈각) 품목의 수입액은 22억 9,909만 1,000달러(한화 약 3조 118억 원)로 전년 대비 36.5% 감소함
 - 밀 기타 품목의 수입액 15억 646만 3,000달러(한화 약 1조 9,735억 원)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8.7% 증가함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21,077,065	21,035,821	21,732,592	29,756,054	29,294,708	100.0	-1.6	8.6
1 대두유 추출 유박	2,054,226	1,845,242	1,925,724	2,525,448	2,835,717	9.7	12.3	8.4
2 캐슈너트 (미탈각)	1,900,260	1,668,415	1,418,765	3,619,816	2,299,091	7.8	-36.5	4.9
3 밀 기타	1,176,202	720,289	809,188	1,386,154	1,506,463	5.1	8.7	6.4
4 대두 기타	771,016	686,059	772,103	1,181,837	1,274,699	4.4	7.9	13.4
5 팜유 기타	541,439	530,770	694,470	1,043,392	1,260,845	4.3	20.8	23.5
6 카사바	236,845	194,175	162,513	543,357	1,175,864	4.0	116.4	49.3
7 조제 식료품	586,243	798,919	795,842	942,112	1,137,012	3.9	20.7	18.0
8 냉동 소고기	217,970	316,978	418,639	514,460	747,962	2.6	45.4	36.1
9 사탕수수 기타	29,717	25,459	432,628	544,011	516,798	1.8	-5.0	104.2
10 쌀(정미)	21,477	16,842	102,633	435,437	453,469	1.5	4.1	114.4

* 주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ITC TradeMap(www.trademap.org)

한국의 베트남 농식품 수출현황

- 2022년 한국산 농식품 베트남 수출액은 6억 6,429만 5,000달러(한화 약 8,702억 원)로 전년 대비 15.4% 증가함

- 농산물 수출 비중이 70.1%로 가장 높고, 축산물(20.7%)과 임산물(9.3%) 순임

* 농산물 수출액은 4억 6,534만 달러(한화 약 6,096억 원)로 전년 대비 15.3% 증가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0.9%의 성장세임

* 축산물의 수출액은 1억 3,738만 8,000달러(한화 약 1,800억 원)로 전년 대비 30.5% 증가, 임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7.5% 감소한 6,156만 7,000달러(한화 약 807억 원)로 집계됨

한국의 베트남 수출규모(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²²)	증감률	
							전년비 (²¹ / ²²)	연평균 (¹⁸ ~ ²²)
전체	447,437	513,984	501,222	575,512	664,295	100.0	15.4	10.4
농산물	308,106	358,318	351,919	403,661	465,340	70.1	15.3	10.9
축산물	77,860	111,916	110,641	105,258	137,388	20.7	30.5	15.3
임산물	61,471	43,750	38,662	66,593	61,567	9.3	-7.5	0.0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 주요 수출 품목으로 미절단 냉동 닭고기, 조제식료품 기타, 기타 무알콜 음료 등이 있음
 - 미절단 냉동 닭고기는 5,896만 2,000달러(한화 약 772억 원) 규모를 형성하였으며, 조제식료품 기타가 전년 대비 24.8% 신장한 5,765만 1,000달러(한화 약 755억 원)의 실적을 기록함

한국의 베트남 수출 상위 5개 품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²¹)	증감률	
							전년비 (²⁰ / ²¹)	연평균 (¹⁸ ~ ²²)
전체	447,437	513,984	501,222	575,512	664,295	100.0	15.4	10.4
1 미절단 냉동 닭고기	15,097	29,007	35,667	0	58,962	8.9	-	40.6
2 조제식료품 기타	15,426	25,311	35,022	46,180	57,651	8.7	24.8	39
3 기타 무알콜 음료	26,736	31,868	31,475	34,427	51,804	7.8	50.5	18
4 홍삼 조제품	7,445	10,102	10,378	15,017	23,461	3.5	56.2	33.2
5 조미김	-	2,597	10,793	15,716	18,978	2.9	20.8	-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3. 통관 및 검역 제도

• 수출입절차

프로세스	상세내용	주체
자유판매증명서 발급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자유판매증명서(CFS) 발급 필요 - 제출서류 : ① 식품등의 제조·가공업 영업허가서 사본 1부 ② 수출제품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③ 영문 검사성적서 원본 1부(필요 시) ④ 수출신고필증	국내 수출업체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수출 품목에 대한 베트남의 위생기준, 검역 요건, 포장 및 라벨링 요건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파악	국내 수출업체
수출신고 및 운송수단 선적	- 관세청 UNI-PASS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세관에 제반서류 제출 - 제출서류 : ① 수출신고서 ② 상업송장 ③ 포장명세서 등 - 수출신고 완료 후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되며,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선적 완료	국내 수출업체
수입허가 취득	- 일부 품목은 베트남 수입 전 수입허가서 취득 필요 - 대상품목 : 딸기, 토마토, 감 등 생과실·일부 채소류 냉동 닭고기 등 - 제출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② 수입허가신청서 ③ 위생증명서 ④ 수출계약서	베트남 수입업체
식품등록	'안전성 공표' 후 식품 유형별로 유관기관에 등록 - 대부분의 일반식품은 자체등록 대상으로, 등록 시 제반서류 제출 필요 - 자체등록 제출서류 : ① 자율등록신청서 ② ISO 17025 기준충족 식품안전서류	베트남 수입업체
수입신고	- 국경 도착 전후 30일 이내에 VANCCS 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 완료 - 제출서류 : ① 세관수입신고서 ② 수출계약서 또는 신용장 ③ 선하증권 ④ 상업송장 ⑤ 포장명세서 ⑥ 원산지증명서 ⑦ 식품안전증명서류 ⑧ 자유판매증명서	베트남 수입업체
수입검사	- 물품 위험도에 따라 ① 녹색 ② 황색 ③ 적색채널로 통관채널을 구분하며 채널별로 수입검사 내용 상이 - 수입검역 대상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상품 도착 5일 전까지 제반서류를 제출해 검역 등록(신청) 필요 - 제출서류 : ① 검역검사등록신청서 ② 검사제품이 해당하는 품질기준 사본 ③ 검사보고서 등	베트남 수입업체
관세 납부 및 반출	관세 납부 후 물품 반출 가능	베트남 수입업체

통관 및 검역 제도

① 국내 수출통관 절차

▶ 수출 전 준비사항

자유판매 증명서 발급	●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수출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자유판매 증명서(CFS, Certificate of Free Sale) 취득 필요 - 자유판매증명서는 해당 업체의 제품이 제조국 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베트남은 모든 수입식품에 대해 영문으로 작성된 자유판매증명서를 요구함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음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URL : www.foodsafetykorea.go.kr 자유판매증명서 발급 시 제출 서류 <table> <tr><td>① 식품 등의 제조·가공업 영업허가서 사본 1부</td></tr> <tr><td>② 수출제품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td></tr> <tr><td>③ 영문 검사성적서 원본 1부(분석증명서를 받는 경우에 한함)</td></tr> <tr><td>④ 수출신고필증</td></tr> </table> - 자유판매증명서 발급까지는 약 3일이 소요되며,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① 식품 등의 제조·가공업 영업허가서 사본 1부	② 수출제품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③ 영문 검사성적서 원본 1부(분석증명서를 받는 경우에 한함)	④ 수출신고필증
① 식품 등의 제조·가공업 영업허가서 사본 1부					
② 수출제품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③ 영문 검사성적서 원본 1부(분석증명서를 받는 경우에 한함)					
④ 수출신고필증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 수출 품목에 대한 베트남 위생기준·검역 요건·포장 및 라벨링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파악 필요 - 일반 사전 포장식품, 신선 농산물, 축산물 제품 등에 요구되는 위생기준 - 라벨링·식품첨가물 규정 등 수입요건이 상이하므로, 국내 수출업체는 원활한 수출을 위해 품목별 수입요건을 사전에 파악해야 함 - 또한, 품목별로 국가기준(TCVN)이 마련되어 있어, 사전에 국가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 후 관련 요건을 준수해야 함				
원산지 증명서 발급	● 베트남 수출 시 한-베, 한-아세안 FTA 및 RCEP 협정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 필요 - FTA 관세율, RCEP 관세율을 활용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필수 - 대한상공회의소 및 세관을 통해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기관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선적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선적 완료 전 발급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 국내 수출통관 절차

수출신고

- 수출업체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기반으로 수출신고서 작성 후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수출신고 필수
 - 수출신고는 수출업체(화주)와 수출업체를 대신하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완제품 제공자 명의로 신고할 수 있음
 - 접수 결과에 따라 ① 서류 심사 후 수리 ② 현품 검사 후 수리 ③ 자동수리로 구분해 수출통관 진행

수출신고 수리 유형

서류 심사 후 수리	실제 신고내용과 수출신고 근거 서류상의 일치 여부 확인
현품 검사 후 수리	우범성이 높은 물품을 대상으로, 수출신고 물품 외 은닉 물품 여부, 신고사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
자동 수리	세관의 심사 없이 자동 수리 후 수출신고필증 발급

- 수출신고 수리 후 수출업체는 '수출신고필증'을 수령함
- 수출업체(화주)는 관세법에 따라 ① 수출신고필증 ② 수출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③ 수출 거래관련 계약서 및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④ 반송신고필증 등을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함

수출검역

- 베트남과의 합의된 요건이 있거나,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경우 수출검역 신청 필요
 - 베트남으로 △딸기 △토마토 △감 △파프리카 △배 △사과 △포도 △구근류 △냉동 닭고기 등 수출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검역을 신청해야 함
 - 딸기, 토마토, 감, 파프리카 등에 대해서는 과수원 및 선과장 등 재배지 검역이 별도로 요구됨
 - 수출검역 신청 시 수출검사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함

수출검역 신청 시 제출 서류

식물검역	① 수출식물 검사 신청서
	② 검사대상 식물 명세서(수출검사 대상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③ 수입허가 증명서(상대국의 사전허가가 필요한 경우)
	④ 수출검역 요령에 명시된 수입국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국이 검사증명서에 부기를 요구할 경우)
축산물검역	① 수출 검사 신청서
	② 선적 관련 서류
	③ 수출 상대국 요구사항(상대국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 수출검역은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희망하는 장소·시간에 실시하며, 수출 상대국의 검역요건에 적합하는지 여부를 검사함
- 수출검역 결과 합격 시 검역증명서가 교부되며, 불합격 시 신청자가 소독하거나 선별한 후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음

운송수단 선적

- 수출업체는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내에 선박 등 운송수단에 적재 필요
 - 단,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 기간 연장이 가능함

② 베트남 수입통관 및 검역 절차

▶ 베트남 수입통관 및 검역 절차

수입허가서 취득	● 생과실·일부 채소류 및 냉동 닭고기 수출 시 사전에 수입허가서 취득 필수 - 딸기, 토마토, 감, 파프리카, 냉동 닭고기 등을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베트남 식물관청당국 및 동물보건부의 수입허가를 사전에 취득해야 함 - 수입허가 취득 시 다음의 서류를 유관기관에 제출해야 함 수입허가서 취득 시 제출 서류 <table> <tr><td>① 사업자등록증</td></tr> <tr><td>② 수입허가 신청서</td></tr> <tr><td>③ 수출국 발행 위생증명서</td></tr> <tr><td>④ 수출계약서 등</td></tr> </table>	① 사업자등록증	② 수입허가 신청서	③ 수출국 발행 위생증명서	④ 수출계약서 등						
① 사업자등록증											
② 수입허가 신청서											
③ 수출국 발행 위생증명서											
④ 수출계약서 등											
식품 등록	● 베트남 수입업체는 식품 품목별 유관기관에 수입식품 등록 필요 - 베트남은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식품을 관할기관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며, 식품의 종류에 따라 식품 등록 절차 및 기관이 상이함 - 식품 안전성에 대해 공표한 후 유관기관에 등록함 식품 유형별 등록기관 <table> <tr> <td>베트남 보건부</td><td>가공식품 및 음료,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td></tr> <tr> <td>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td><td>육가공품(햄, 소시지 등), 과일 및 채소, 어류 및 육류</td></tr> <tr> <td>베트남 무역산업부</td><td>주류(알코올 음료), 우유류, 식물성오일</td></tr> </table> - 대부분의 일반식품의 경우 기업이 자체적으로 식품안전성 공표 후 보건부에 자체적으로 등록하나, △36개월 미만의 영유아 식품 △미등록 식품첨가제의 경우 보건부 승인 후 등록이 완료됨 - 수입되거나 베트남에서 생산된 기능성 식품은 제품 자율 신고 및 제품 신고 등록 절차 진행 필요(No.15/2018/ND-CP와 No/155/2018/ND-CP 근거) - 식품 등록 시 등록 신청서, 자유판매증명서 등을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함 유형별 식품 등록 제출서류 <table> <tr> <td>보건부 승인 대상 식품</td><td>제품등록 신청서, 자유판매증명서, ISO 17025 기준 총측 식품안전서류, GMP 증명서</td></tr> <tr> <td>자율 등록 대상 식품</td><td>자율 등록 신청서, ISO 17025 기준총측 식품안전서류</td></tr> </table>	베트남 보건부	가공식품 및 음료,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육가공품(햄, 소시지 등), 과일 및 채소, 어류 및 육류	베트남 무역산업부	주류(알코올 음료), 우유류, 식물성오일	보건부 승인 대상 식품	제품등록 신청서, 자유판매증명서, ISO 17025 기준 총측 식품안전서류, GMP 증명서	자율 등록 대상 식품	자율 등록 신청서, ISO 17025 기준총측 식품안전서류
베트남 보건부	가공식품 및 음료,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육가공품(햄, 소시지 등), 과일 및 채소, 어류 및 육류										
베트남 무역산업부	주류(알코올 음료), 우유류, 식물성오일										
보건부 승인 대상 식품	제품등록 신청서, 자유판매증명서, ISO 17025 기준 총측 식품안전서류, GMP 증명서										
자율 등록 대상 식품	자율 등록 신청서, ISO 17025 기준총측 식품안전서류										

수입신고

- 베트남 수입업체는 국경 관문 도착 전 또는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신고 완료 필수
 - 베트남 수입업체는 전자통관시스템인 '베트남 자동화물 및 항구 통합 시스템(VANCCS, Vietnam Automated Cargo and Post Consolidated System)'을 통해 수입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함

베트남 수입신고 제출서류

① 세관수입신고서
② 수출계약서 또는 신용장
③ 선하증권
④ 상업송장
⑤ 포장명세서
⑥ 원산지증명서
⑦ 식품안전증명서류(Export Certification)
⑧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수입검사 및 검역

- 수입 물품의 위험도에 따라 세관에서는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진행
 - 물품 위험도에 따라 베트남 세관은 녹색채널, 황색채널, 적색채널로 통관채널을 구분해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를 진행함

베트남 통관채널별 세관검사 내용

녹색채널	저위험식품 세관 서류 및 물품검사 면제, 전산신고만으로 수리가능
황색채널	중위험식품 세관의 요청시에만 물품검사 시행, 전자 또는 원본서류 제출
적색채널	고위험식품 전수검사 대상, 무작위로 수입 물품 수량의 5% 또는 10% 검사, 세관에 종이 서류 제출

- 물품 검사비는 소매가격의 0.1% 또는 30만 동 중 높은 가격으로 책정
- 베트남에 수출하는 횟수가 6회 이상인 경우, 처음 5회는 연속으로 검사를 진행 이후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류 확인 후 1년간 검역 면제 가능
- 수입되는 가공식품 중 13개 품목에 대해 통관 시 검역이 필요하며, 베트남 수입업체는 상품 도착 5일 전까지 베트남 보건부 및 관할 수입지역 공중보건연구소에 검역 등록 필요
 - 검역 및 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음

수입검사
및 검역

베트남 수입검역 및 검사 대상 품목

① 고기 및 어류의 조제품	⑨ 조미료
②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⑩ 음료, 알코올 음료, 식초
③ 우유 및 각종 유제품	⑪ 식품포장재
④ 설탕 및 각종 설탕과자	⑫ 기능성식품, 건강보호식품
⑤ 커피, 차, 후추	⑬ 식품첨가물
⑥ 채소 및 과일로 만든 조제품	
⑦ 카카오, 카카오 성분을 포함한 각종 조제품	
⑧ 곡물/곡분/전분/우유조제품, 베이커리 제품	

- 베트남 수입업체는 제반 서류를 구비해 검역검사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검사 기관은 서류심사 후 검사예정방법을 확인하고 검사일정을 통지함

베트남 수입검역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

① 검역검사등록신청서
② 검사제품이 해당하는 품질기준 사본
③ 품질기준이 공표되어 있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는 지정된 검사기관 또는 제조자에 의한 검사보고서
④ 기타 검사의 간략화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이후 수입 제품의 종류, 규격, 포장, 라벨, 수량, 상태 등의 검사를 실시, 샘플 분석 후 기초기준과 베트남 국가기준(TCVN)을 비교 후 결과를 통지함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 베트남 수입업체는 관세 납부 후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
 -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담배와 주류에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됨

관세 등 산정 기준

수입관세	[수입물품가격(CIF) + 하역 비용] × 관세율
부가가치세	(과세가격+관세) × 부가가치세율(10%) 부가가치세율 0~10% 범위, 일반적으로 10%
특별소비세	담배 CIF 가격 × 75% / 주류 CIF 가격 × 25~50% 담배 특별소비세율 기존 65%에서 75%로 인상

- 수입신고 서류 제출일로부터 물품 반출까지 통상 3~5일이 소요됨

베트남의 FTA 체결현황

가체결	협상중	검토중
(발효 및 서명) ASEAN 전체 차원, 일본, 칠레, 한국, VCU, TPP, EU, EFTA, RCEP, 쿠바, 영국 (ASEAN) (발효 및 서명) 중국, 일본, 홍콩, 한국, 인도, 호주·뉴질랜드, 홍콩, RCEP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주 : 2023.10. 조회 기준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www.fta.go.kr)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현황

발효	서명/타결	협상중	재개개시 여건조성
한-베트남 FTA 한-ASEAN FTA RCEP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주 : 2023.11. 조회 기준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www.fta.go.kr)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³⁾

1. 수출 가능 품목

● 농산물

- 곡류 : 쌀(백미, 현미, 흑미), 밀, 옥수수, 콩
- 과일류 : 사과, 배, 포도, 감(단감)
 - * 감(단감) : 「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베트남측과 합의된 요건을 준수하여 수출 가능
- 채소류 : 딸기, 토마토, 당근, 배추, 무, 양파, 마늘, 양배추, 파프리카, 들깨잎
 - * 딸기 :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베트남측과 합의된 요건을 준수하여 수출 가능
 - * 토마토 :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베트남측과 합의된 요건을 준수하여 수출 가능
 - * 파프리카 :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베트남측과 합의된 요건을 준수하여 수출 가능
- 견과류 : 밤(미탈각)
- 특작류 : 인삼
- 서류 : 감자(씨감자)
- 종자류 : 무, 배추, 양배추, 고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토마토, 대파, 당근, 콜라비, 박, 시금치, 청경채, 양상추
- 버섯류 : 느타리, 송이, 새송이, 양송이, 영지, 팽이
- 버섯종균
 - * 2007.4월부터 생과실·과채류·재식용 식물에 대한 PRA 규정을 도입, 품목별 PRA 자료를 베트남측에 제공해야 수출가능 (2007.4월 베트남측의 PRA 규정 도입 전 베트남으로 수출 실적이 없는 품목의 경우 수출 불가 품목에 해당)
 - * 채소류는 수입허가서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일부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감염 우려가 있는 품목(무, 당근, 인삼 등)은 사전 수입허가서를 받아야함

● 축산물

- 가금육, 칠면조 육가공품, 오징어 간유, 오징어 간분, 사료제품
 - * 국내 고병원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산 가금육 수출 불가(방역지역 해제 시 수출 가능)

3) 농산물 수출 검역 조건_농림축산검역본부(2023), <https://www.qia.go.kr/listWebQia3WGJYYQ.do?clear=1>

2. 수출 불가 품목

• 농산물

- 과실류 : 감귤, 복숭아, 대추, 망고
- 채소류 : 멜론(참외), 호박, 오이, 고구마, 애호박
- 종자류 : 인삼, 벼, 콩, 잔디
- 묘목류 : 소나무, 주목
- 특작류 : 새싹삼(요과 줄기가 포함)
- 화훼류 기타 : 심비디움묘, 말기묘, 팔레놉시스묘, 백합구근, 칼라구근, 장미묘목, 호접란 (팔레놉시스)묘 등

축산물 품목별 수출 가능 여부 확인 방법

• 축산물 품목별 수출 요건

- 각 나라마다 축산물의 수입에는 국가에서 정한 위생 조건이 있음
- 수출 제품에 대한 수출증명양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으므로, 반드시 수출 전 해당 국가의 요구 조건을 확인하여야 함

• 검색 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https://www.qia.go.kr>) 사이트
(농림축산검역본부 > 동물검역 > 동물축산물검역 > 수출축산물검역 > 품목별수출요건 > DB검색)
- 국가명과 품목을 검색하여 수출 가능여부 확인 가능

1. 농림축산 검역본부 사이트	2. 동물검역 > 동물축산물 검역	3. 수출축산물검역 > 품목별 수출 요건 > DB 검색
		

3. 현지 바이어 인터뷰

인터뷰 업체 정보

업체명	Korea Mart(베트남)
업체 유형	한국식품 유통업체
담당자명	Ms. Dung

- 현지 국가에서 인기 있거나 수출 가능성이 있는 한국산 농식품
 - 자사에서 가장 잘 팔리는 한국산 채소는 배추이며, 과일 중에서는 딸기와 배가 대량 판매되고 있음
 - 베트남 현지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가공식품은 떡볶이와 만두임 베트남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즐겨 먹음. 예전에는 베트남 전통 떡을 선호하였으나, 젊은 층 사이에서 한국 영화와 한국 문화가 유행하면서 한국 떡이 유행을 끌고 있음
- 수입 시 애로사항
 - 고려 인삼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수요가 높으나, 인삼은 한국과 직접 거래를 하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서 자사에서 직접 판매하지 않음. 베트남 내 인삼 유통업체는 세계 각국의 대도시에 소재한 다국적 기업으로, 소규모 한인 마트가 경쟁에 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인삼을 보관할 수 있는 고품질의 저장고를 마련해야 하는 등 기초 자본이 많이 듦
 - 신규 공급업체나 한국기업이 당국의 인증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준비하는 경우, 세관 당국에 등록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복잡해 대부분의 기업들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대행업체 등과 함께 진행하고 있음

1. SPS

주요 SPS 내용

- 보건부 관리 범위 내의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가공보조제, 향료, 포장재료,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에 대한 이력추적 규칙, 이력추적 상황, 그 책임 등에 대한 규정이 공포됨. 2019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되며, 식품 가공업체에서는 “전·후 가공공정에 대한 이력”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베트남 정부 시행령에 따라 제조 일자가 2019년 7월 1일 이후인 제품부터 수입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입자격 요건을 추가함. 2019년 6월 30일까지 제조된 상품은 ‘식품공포서류 등록접수증’ 또는 ‘식품안전규정 부합 공포확인증’을 구비한 경우 유통기한 내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며, 해당 규정에 영향을 받는 수입 제품은 식품 수입 전 GMP 인증서류의 추가 신고가 필요함
- 베트남은 2007년 4월부터 생과일, 과채류, 재식용 식물에 대해 PRA(Pest Risk Analysis, 해충위험분석) 규정을 도입함. 품목별로 우리나라 정부가 PRA를 제출한 뒤 시장접근 승인 과정을 거쳐야 수출이 가능함
- 2021년 8월 베트남의 면제품에서 유해물질(에틸렌옥사이드(EO))이 검출되어 리콜 조치 된 바 있음. 이에 베트남은 식품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EO) 함량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법안 마련에 착수함
- 베트남 정부는 2023년 5월 18일 가금류축산산업 보호를 위한 총리령 전보 제426/CD-TTg 호를 공포함. 해당 총리령의 주요 내용은 동물 및 동물 제품에 대한 검역 강화,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불법 운송을 통한 밀수 단속 강화 등이었음. 관련 통관을 ‘수입허가 후 3-7일 내 통관 완료’에서 ‘수의국 검역 및 확인 필요’로 변경하여, 수입·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주요 SPS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SPS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잔류농약 허용치	잔류농약 규격기준	http://www.spsvietnam.gov.vn/en/notification-of-viet-nam
식품 첨가물 허용치	식품 첨가물 사용 기준	http://www.spsvietnam.gov.vn/en/gspsnvnm101
미생물 규정	식품별 규격기준 (품목별 미생물 기준 규정)	http://www.spsvietnam.gov.vn/en/notification-of-viet-nam

통보문 개정 현황(2023년)

• 가금류 수입 검역 강화

문서번호	-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세부 내용	• 베트남 정부는 2023년 5월 18일 베트남가금류사육협회(VIPA, Vietnam Poultry Breeding Association)에서 제출한 국내 가금류축산산업 보호를 촉구하는 공문을 반영한 총리령 전보 제426/CD-TTg호를 공포 - VIPA는 가금육 단가 하락, 소비 위축 등으로 폐업 위기가 증가하고 있어 축산물 수입에 대한 엄격한 통제, 특히 성장촉진제가 투여된 가금류 수입금지를 건의 • 총리령 전보 주요 내용 - 동물 및 동물제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 - 조류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불법 운송을 통한 밀수 단속 강화 • 검역 관련 조치 - 통관을 '수입허가 후 3-7일 내 통관 완료'에서 '수입국 검역 및 확인 필요'로 변경, 소요일을 명확하지 않게 하여 수입국의 수입승인이 지연될 수 있음 - 온라인으로 가능하던 검역 신청을 방문 및 수기 처리로 '불편하게' 변경 • 베트남은 우리나라 닭고기 수출의 주요 시장 중 하나인데 베트남 정부의 가금류 검역 강화 조치로 한국산 닭고기 수입 바이어에게 수입·통관이 지연되는 등 관련 애로사항이 발생
통보일	-
시행예정일	2023년 05월 18일
개정현황	-
출처	https://www.kita.net/tradeNavi/nonTraiffMeasure/nonTraiffMeasureDetail.do?ntmId=NTB0203645

(2) TBT ⁴⁾

주요 TBT 내용

- 감미료에 관한 국가 기술규정안(2020년 1월 6일 공고)
 - 본 기술규정안은 10개 감미료(시클라메이트 칼슘, 시클라메이트 나트륨, 사카린 칼슘, 사카린 칼륨, 사카린 나트륨, 수크랄로스, 알리탐, 아스파탐-아세설팜, 폴리글리시톨 시럽, 소르비톨 시럽)의 품질, 위생, 그리고 안전에 대한 기술 요건과 관리항목을 다루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생산, 거래, 수입하는 경우 적용됨
- 베트남 보건부는 다음과 같은 식품안전에 관한 다수의 법률 문서를 수정, 보완 및 폐지하는 고시 초안을 발표함
 - 식품첨가물의 관리 및 사용 규제
 - 식품 내 오염 및 화학물질의 최대 한도 규제
 - 식이보충제 생산 및 거래에서 모범 제조 관행(GMP) 안내
 - 기능성 식품 관리 규제
 - 보건부 관리하에 식품 생산 및 무역에 있어 식품안전 검사 활동 규정
 - 보건부장관이 공포하거나 공동으로 공포한 일부 입법문서의 개정 및 폐지
 - 식품 품질, 위생 및 안전의 검사 및 조사를 위한 샘플 채취 지침
 - 식품 내 멜라민 교차 오염의 최대한도규정 공포
 - 보건부 관리하에 식품 생산 및 무역에 관한 식품안전검사 활동 규제
- 건강 보조 식품에 포함된 최대 수준의 오염물질에 대한 국가 기술규정 초안
 - 본 기술규정안은 건강보조식품, 식이보조식품에 대한 분류 및 정의, 오염물질의 제한, 식품 샘플링 및 검사방법, 건강보조식품을 생산 및 거래하는 조직, 개인의 요구사항 및 책임 관리에 관해 규정함
- 베트남 정부는 수입·유통되는 건강보조식품, 식료품, 주류 품목의 라벨링 규정의 개정본을 공포함(효력발생일 : 2022년 2월 15일)
 - 베트남 내 유통되는 식품 라벨에는 베트남어로 표기되어야 함
 - 수입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필수 정보를 라벨에 기재해야 함
 - 생산국가 지역명을 “~에서 생산”, “~에서 가공”, “~원산지”, “~로부터 생산”, “~의 상품”과 함께 표기되어야 함

4) TBT(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각 국가가 지정한 자국의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라벨링, 인증 요건 등이 있음. 일례로, 국내 식품 라벨링 규정과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이 상이할 경우 수출기업은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수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

• 주요 TBT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TBT 개정안	E-PING(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식품 라벨링	식품 라벨링 규정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uong-mai/Nghi-dinh-111-2021-ND-CP-sua-doi-Nghi-dinh-43-2017-ND-CP-497099.aspx
포장 규정	식품 포장에 관한 규격	https://baobiminhsang.com/nhung-quy-dinh-ve-bao-bi-thuc-pham/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및 라벨링 예시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라벨 표기사항 (항목)	• 제품명 • 제품 책임업체의 명칭 및 주소 • 원산지	• 제품 용량(총 중량) • 생산일자, 유통기한 • 성분 및 성분 함량 또는 영양정보	• 섭취방법 및 경고문구 • 보관 방법 및 사용 방법
	표기 언어	• 베트남어로 표기할 것 • 베트남어로 표기되어 있고, 규정이 정하고 있는 필수 라벨 내용을 담고 있는 부착물도 인정함 • 베트남 명칭이 없거나 번역이 불가능한 화학물질,약품, 성분 등 법률이 정하는 명칭은 제외함 • 글자의 크기는 육안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1.2mm 이상. 단, 80cm 이하인 경우에는 0.9mm 이상)	
		• 눈에 띄는 위치에 표시할 것 • 필수 기재사항 중 가장 큰 크기로 표기할 것	
		• 숫자 혹은 개수로 표기할 것 • 표기 단위 및 표기 방법은 규정을 참조할 것	
		• 제품명에 포함된 색상, 향에 관한 첨가물 또는 추출물과 농축물은 해당 원료의 함유량을 표기할 것	
	제품명	• 상품이 생산되거나 상품의 최종 마무리 단계가 수행되는 국가의 이름 또는 지역명은 약어로 표시해서는 안됨 • 라벨에 기재된 상품의 원산지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이름을 다음 중 하나로 표기해야 함 • “made in”, “manufactured in”, “country of origin”, “country”, “manufactured by”, “product of” • 상품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상품이 최종 단계를 거쳐 완성되는 국가 또는 지역명을 표시해야 함 • “assembled in/at”, “bottled in/at”, “mixed in/at”, “finished in/at”, “packaged in/at”, “labeled in/at”	
	제품 용량		
	원산지		

원산지	• 상품이 생산되거나 상품의 최종 마무리 단계가 수행되는 국가의 이름 또는 지역명은 약어로 표시해서는 안됨 • 라벨에 기재된 상품의 원산지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이름을 다음 중 하나로 표기해야 함 • “made in”, “manufactured in”, “country of origin”, “country”, “manufactured by”, “product of”
	• 상품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상품이 최종 단계를 거쳐 완성되는 국가 또는 지역명을 표시해야 함 • “assembled in/at”, “bottled in/at”, “mixed in/at”, “finished in/at”, “packaged in/at”, “labeled in/at”
유통기한	• ‘일, 월, 년’ 순으로 작성할 것 • ‘.’, ‘/’, ‘-’를 이용하여 구분할 것 • ‘제조일’은 ‘NSX’, ‘만료일’은 ‘HSD’ 또는 ‘HD’의 약어로 표시할 수 있음 • 알코올 함량이 10% 이상인 음료 제품의 경우 제조일 및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음
	• 성분, 식품첨가물을 표시할 때 중량 대비 성분의 비율 또는 중량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기해야 함 • 영양성분표에 표기해야 하는 영양성분 : 에너지, 단백질, 탄수화물, 설탕,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 1회 섭취량 또는 100g(ml)를 기준으로 영양성분의 함량과 권장량 대비 함량 비율(NRV)을 작성해야함 * 식품의 영양성분 라벨링 지침(‘24.1.1부터 준수 필요)
	• 홍보를 위해 특정 성분이 라벨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성분에 대한 용량은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함 • 식품첨가물의 명칭은 국제 코드 또는 성분명으로 작성해야 함 • 2개 이상의 식품첨가물을 표기하는 경우 중량 대비 비중 순으로 나열함 • 식품첨가물 이름 아래에 ‘Dùng cho thực phẩm(식품을 위해 사용됨)’의 문장을 최소 2mm 이상의 굵은 글씨체로 표기해야 함 • 아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추가적인 표기 필요함 • 글루텐을 함유하고 있는 곡물 또는 식품(e.g. 밀, 호밀, 귀리 등과 이를 활용한 전분 등), 갑각류, 달걀과 달걀 제품, 어류와 어류 제품, 땅콩, 대두와 관련 제품, 우유와 유제품(락토스, 설탕, 우유 포함), 견과류와 관련 제품, 10mg 또는 그 이상의 농도인 아황산염 • 보충용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의 표시 요건은 RNI 수준에 따라 달라 규정 (No.43/2014/TT-BYT) 확인 필요
성분 및 성분 함량 또는 영양 정보	
보관방법	• 보관 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 조건과 함께 보관 가능 기간을 표기해야 함
사용방법	• 제품 라벨이 10cm 미만인 제품의 경우, 사용방법을 보충 라벨 또는 설명서의 형태로 제품에 첨부해야 함
GMO 식품	• 제품에 ‘Thực phẩm biến đổi gen(genetically engineered food)’ 표기해야 함 * 건강기능식품, 음료, 주류, GMO식품의 필수 표기 정보는 별도 규정 참고 (Lawnet, Decree 111/2021/ND-CP)

• 샌드위치/랩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매운 소스에 버무려진 다진 해산물 빵
원재료명	빵 어묵 베트남 고수 새우 사테이 칠리 소스 백설탕 피쉬 소스 및 주스
출시일(발행일)	2022. 06. 01
저장방법	냉장 보관
제조사	GN Foods
알레르기 주의 성분	해산물, 갑각류

• 요리용 소스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한국식 양념 치킨 소스										
원재료명	백설탕 엿당 양파 증점제 식물성 오일 소금 파인애플 추출물 치즈 분말 건조 계란 노른자(분말) 향미 증진제 후추 인공 치즈맛 천연 감미료 방부제										
내용량	120g										
출시일(발행일)	2022. 01. 07										
저장방법	상온 진열										
제조사	Miwon Company										
제조지(원산지)	한국										
영양성분 정보	<table><tr><td colspan="2">제공량 100g당</td></tr><tr><td>열량(Kcal)</td><td>183.2kcal</td></tr><tr><td>탄수화물</td><td>33.4g</td></tr><tr><td>단백질</td><td>1.4g</td></tr><tr><td>지방</td><td>5.1g</td></tr></table>	제공량 100g당		열량(Kcal)	183.2kcal	탄수화물	33.4g	단백질	1.4g	지방	5.1g
제공량 100g당											
열량(Kcal)	183.2kcal										
탄수화물	33.4g										
단백질	1.4g										
지방	5.1g										

인증

[필수 인증]

• VFA 적합성 인증

- 식품안전시행법 세부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식품위생과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도입됨. 수입식품을 포함한 베트남 내 유통되는 식품에 해당하며, 가공식품, 소비재로서의 일반 음료, 건강보조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제, 포장재료, 음식과 직접 접촉하는 도구 등에 대해서 적용됨. 베트남 소재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가 신청하며, 식품의 적합성을 공표한 후 등록하여 인증을 취득할 수 있음
- 제출 서류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사전 준비 시 주의가 필요함. 특히 서류에 대한 과도한 수정 요구나 서류 형식상의 문제 제기가 많이 발생함

인증명	VFA 적합성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베트남 보건부 산하 식품청(VFA) ⁵⁾	
강제유무	필수	
제출 서류	판정 신청서, 제품 상세정보, 제품 시험결과서, 품질관리계획, 제품 샘플, HACCP / ISO22000 / GMP 혹은 기타 동등한 인증서, 식품안전요건을 충족시키는 시설에 대한 인증서 또는 증명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적합인증서	
비용	품목당 650,000~1,650,000동(시험비 제외)	
소요기간	약 15~30일	
절차	서류제출 → 서류 검토 및 감정평가 결정 → 적합성 평가 → 식품안전규정 적합성 선언문 발표 → 식품안전규정 적합성 판정 신고 → 신고 접수 확인 및 공개 통보 (발급일로부터 3년 유효)	

5) 관련 사이트 : <https://vfa.gov.vn/>

[선택 인증]

• GMP

- 건강기능식품을 베트남에 수출할 시 GMP 인증은 필수로 취득해야 함. HACCP의 경우 선택적으로 취득 가능함

인증명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식품·의약품 품질관리 기준)	
발행 및 검사기관	베트남 보건부(MOH/VFA) 지정 검사기관	
강제유무	선택(건강기능식품에 한해 필수)	
제출 서류	신청서 및 인증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소요기간	약 40일	
절차	서류제출 → 서류 검토 → 현장실시 및 시설조사 → 판정 → 인증발급	

• VietGap

- 2008년부터 시작된 인증으로 EUREP-GAP, GlobalGAP 인증을 계승하여 만들어진 인증임. 베트남 소비자들은 해당 인증으로 유기식품의 여부를 구분하기 때문에 유기식품 시장 진출 시 상기 인증을 취득하는 것을 권장함

인증명	VietGap(Vietnamese Good Agricultural Practices, (베트남 우수농산물 품질인증제도))	
발행 및 검사기관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강제유무	선택	
제출 서류	신청서, 제품 상세정보, 사용 원료 및 위생 관련 정보 등	
비용	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	
소요기간	3년 미만	
절차	인증 신청 → 신청 내용 검토 → 비용 견적 → 현장 감사 → 승인 여부	

● 기타 식품 안전 인증

- 기타 식품 안전과 관련된 인증으로는 ISO 22000, IFS, BRC Food Safety, FSSC 22000 등이 있음

인증명	ISO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발행 및 검사기관	정부 지정 인증기관 또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증기관	
강제 유무	선택	
제출 서류	신청서, 인증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비용	인증기관에 따라 상이	
소요기간	인증기관에 따라 상이	
절차	서류 제출 → 인증 계약 → 계획 통보 → 서류 및 현장 심사 → 시정 조치 → 인증 심의 → 인증 → 사후관리심사 → 갱신 심사	

인증명	IFS	
발행 및 검사기관	IFS 지정 인증기관	
강제 유무	선택	
제출 서류	신청서, 인증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비용	약 24주	
소요기간	약 900 ~ 1,000만원	
절차	인증 신청 → 사전 심사 → 현장 심사 → 부적합 사항 시정 조치 → 인증 발급	

인증명	BRC Food Safety	
발행 및 검사기관	BRC 지정 인증기관	
강제 유무	선택	
제출 서류	신청서, 식품안전 및 품질에 관한 매뉴얼 등	
비용	인증기관에 따라 상이	
소요기간	약 900 ~ 1,000만원	
절차	인증 신청 → 사전 심사 → 현장 심사 → 부적합 사항 시정 조치 → 인증 발급	

인증명	FSSC 22000	
발행 및 검사기관	FSSC 지정 인증기관	
강제 유무	선택	
제출 서류	신청서, 회사정보, 기취득 인증 등	
비용	인증기관에 따라 상이	
소요기간	약 500 ~ 600만원	
절차	서류 제출 → 1차 현장 평가 → 2차 현장 평가 → 인증 → 사후관리 심사	

04

수출 애로사항

No.	제목	베트남의 원료와 성분기준에 따른 음료 및 주류 품목구분의 어려움	해당국가	베트남
			관련품목	주류
			유형*	TBT
1				
	주요 내용	• 베트남 보건부 산하 식품청(VFA)의 「무알코올 음료 제품에 대한 국가 기술 규정」에 무알콜 음료에 대한 식품안전 및 관리 요구사항에 대한 각종 지표가 정리되어 있음 • 2020년 1월 1일 발효된 「주류(맥주 포함)의 유해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르면, 주류 품목 식별과 관련하여 와인은 혼합물을 발효하여 생산되는 식품 및 알코올 음료로 분류됨. 위 규정에 의거하여 원료에 와인이 포함되어 있는 뱃쇼 제품은 음료가 아닌 주류 품목으로 구분되고, 베트남 통관 수속 시 관세청에서 해당 주류의 알코올 도수를 기재해야 함 • 일정 이상의 알코올 도수(5.5도 이상)를 가진 주류를 수입할 경우 주류 유통허가서가 필요함. 단, 일정 미만의 알코올 도수(5.5도)를 가진 주류이거나 수입 전 인민위원회 또는 인민위원회 산하 경제관리기관(Department of Economics and Infrastructure)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해당 주류물품 수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 관세청에 주류 유통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애로·건의 사항	• 뱃쇼 제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할 때 원료에 와인이 포함되어 있어 품목분류 시 기타음료가 아닌 주류로 분류되며 관세가 부가됨		
	기타	※ 베트남 보건부 산하 식품청(VFA) 홈페이지에서 《QCVN 6-2:2010/BYT 무알코올 음료 제품에 대한 국가 기술 규정》,《QCVN 6-3:2010/BYT 주류 제품에 대한 국가 기술 규정》 확인		

No.	제목	밀가루 수출 시 수출 신고 서류 준비의 어려움	해당국가	베트남
			관련품목	밀가루
			유형*	TBT
	주요 내용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의 「식물보호 및 검역법」에 따라, 밀가루는 식물 검역 대상으로 분류됨. 따라서 밀가루 수출 시 식물 수입 검역 라이선스를 구비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1년임 • 식물 수입 검역 라이선스는 하노이 소재에 있는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산하 식물보호국 (Plant Protection Department)에서 신청 가능함. 발급까지 15일 정도 소요되며, 수출 사전에 취득해야 함 • 라이선스 취득 이후 다음의 수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검역 후 제품 통관이 가능함 - 식물검역 신청서 - 식물 수입 검역 라이선스 - 식물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 원산지증명서(C/O) - 수출계약서 - 수출신고서 - 포장명세서(P/L) - 인보이스 - 상업송장(C/I)		
	애로·건의 사항	밀가루 수출 시, 원산지 증명서, Phytosanitary Certificate 등 요구되는 서류가 많음		
	기타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 홈페이지에서 《식물보호 및 검역법》 확인		

05

현지화 자문보고서

1. 과일즙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수출입 준비서류 및 통관절차
- 제품별 HS코드 및 관세율 기준

수출입 준비서류

- 수출자 준비서류
 - C/O(원산지증명서)
 - 제품 상세 정보
- 수입자 준비서류
 - Cong Bo(판매허가서)
 - 제품 상세 정보

수입통관절차

- 수출자서류 준비(원산지증명서 및 제품 상세 자료)
- 제품관련 서류 일체 및 실물 샘플제출
- 검사결과 수령 후 판매허가서 등록(Web)
 - * 베트남 보건부(MOH)를 통해 판매허가서를 발행받으며, 심사 및 발급까지 7~10일 소요
 - * 판매허가서 등록 시 제품 라벨 검사
- 수입통관신고(수입통관시 판매허가서 번호 등록)
- 품질검사 및 식품안전검사(검사기관 : NATIONAL INSTITUTE FOR FOOD CONTROL)
 - * 베트남 보건부 시행령에 명시된 성분별 기준치 초과시 품질검사 승인 불가
 - * 개별 원료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으나, 품질검사이시 식품안전을 위해 검사를 할 수 있음
 - * 품질검사는 매 수입진행 건마다 필요
 - * 수입통관신고부터 품질검사 결과 수령까지 5~7일 소요

- 수입통관 완료
- 라벨 부착 후 판매

• 관세번호 및 관세율

부 류	제 품	식품규격기준	HS CODE	관세율	비 고
				KVFTA	
				부가세	
사과즙	2009 - 과일·견과류 주스 (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2009.79 - 사과주스, 기타	-	20097900	25%	
				0%	
				10%	
배즙	2009.89 - 그 밖에 한 가지 과실 · 견과류 · 채소 주스, 기타	-	20098991	25%	
				0%	
				10%	
도라지배즙 비트사과즙 당근사과즙	2009.90 - 혼합 주스	-	20099010	25%	
				0%	
				10%	

- 사과즙의 경우 20097100(Brix 값이 20이하인 것)에 해당될 수도 있음

• 제품 샘플 필요 : 품질검사 / 판매허가서 발행을 위해 필요

2. 어린이 비타민 등 3종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건강기능식품 기준 수출입 준비서류 및 통관 절차
- HS CODE 판정 및 관세율 기준

수출입 준비서류

- 수출자 준비서류
 - C/O(원산지증명서)
 - CFS(자유판매허가서)
 - GMP(제조품질관리기준)
 - * 건강기능식품 판단 기준으로, 베트남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입통관 진행시 GMP, HACCP, ISO, CFS 필요
- 수입자 준비서류
 - Cong Bo(판매허가서)
 - 제품 상세 정보
- 수입통관절차
 - 수출자서류 준비(C/O, CFS, HACCP, etc)
 - 제품관련 서류 일체 및 실물 샘플제출
 - 검사결과 수령 후 판매허가서 등록(Web)
 - * 일반식품 : 수입자 자체 발행 / 건강식품 : 베트남 보건부(MOH) 통해 발행
 - * 심사 및 발급까지 7~10일 소요
 - * 판매허가서 등록 시 제품 라벨 검사
 - 수입통관신고(수입통관시 판매허가서 번호 등록)
 - 품질검사 및 식품안전검사(검사기관 : NATIONAL INSTITUTE FOR FOOD CONTROL)
 - * 베트남 보건부 시행령에 명시된 성분별 기준치 초과시 품질검사 승인 불가
 - * 개별 원료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으나, 품질검사 시 식품안전을 위해 검사를 할 수 있음
 - * 품질검사는 매 수입진행 건마다 필요
 - * 수입통관신고부터 품질검사 결과 수령까지 5~7일 소요
 - 수입통관 완료
 - 라벨 부착 후 판매

• 관세번호 및 관세율

부 류	제 품	식품규격기준	HS CODE	관세율	비 고
				KVFTA	
				부가세	
프로폴리스 구강청결제	2208 -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 · 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 2208.90 - 기타	-	22089099	45%	
				48%	
				10%	
어린이 제품 2종	1704 -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1704.90 - 기타	-	17049099	15%	
				0%	
				10%	

- 구강청결제가 포함한 프로폴리스 성분이 알코올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 2208.90.99로 분류되며, 세관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의 프로폴리스를 알코올과 유사한 성분으로 구분하여 2208.90.99로 수입 진행된 사례가 있음
- 알코올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당류와 당시럽 혼합물인 HS CODE 1702.90.20(관세 15%, KVFTA 0%, 부가세 10%)이 적합할 것이라 사료되며, 추후 진행 시 세관에 프로폴리스 성분이 알코올과 유사한 성분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제품 샘플 필요 : 품질검사 / 판매허가서 발행을 위해 필요